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보호·피감독자에 대한 폭행·협박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20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9. 20.
3. 회 부 일: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단서 및 제283조제3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현행 형법상 폭행죄, 존속폭행죄(제260조제1항 및 제2항1)) 및 협박죄, 존속협박죄(제283조제1항 및 제2항2))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음(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

개정안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단서 및 제283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第260條(暴行, 尊屬暴行) ①・② (생략)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만,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 1)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83條(脅迫, 尊屬脅迫) ①・② (생략)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신설>	<u>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u>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만, <u>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u>
---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함. 즉,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³⁾

3)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형사소추를 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음. 형법과 일부 특별법은 국가소추주의의 예외 내지 제한으로서 형사소추권 행사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음.⁴⁾

이 중 반의사불벌죄는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구태여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범죄를 대상으로 함. 즉, 특정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함으로써 법이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다른 일반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소추·처벌을 하도록 하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⁵⁾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된 우리 형법 고유의 제도로써, 현행 「형법」상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및 모욕·명예훼손죄’(제107조 및 제108조), ‘과실치상죄’(제266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및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등이 있음.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4) 이회경,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피해자학연구(2013년), pp.265.-266.

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기업체 등에서 이른바 ‘갑질 폭행’과 같은 사례⁶⁾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또는 협박죄를 범한 경우 일반적인 폭행죄 또는 협박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이라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아울러 사법정의(司法正義)를 확립하겠다는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폭행죄나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는 비교적 경미한 폭행·협박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적 해결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고용관계 등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설 동기가 약화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인 피고용자도 고용주 등의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오히려 신고 자체를 꺼려하여 범죄를 은폐하게 될 가능성

6) 연합뉴스, -“피해자들에 모멸감”... ‘신발로 직원 폭행’ 조합장 징역 10개월(종합)-, 2024. 4. 2., 최종검색일: 2025. 1. 7.,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2053451055>

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둘째, 최근 업무·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연인 간의 교제관계 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가정폭력 등에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처벌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논의⁷⁾가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업무 또는 고용 관계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특수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대해 위의 다른 여러 관계와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죄질이 무거운 폭행·협박의 경우, 예를 들어 상습적인 폭행·협박의 경우 상습범으로,⁸⁾ 폭행으로 치상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사상 으로,⁹⁾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죄¹⁰⁾를 적용하

7) 뉴스1, “한때 ‘연인·부부’ 신고 차마…반의사불벌죄의 그늘[의대생 사건 그후]⑤” 2024. 5. 14., 최종검색일: 2025. 1. 7.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14707>; SBS뉴스, ‘교제 폭력’ 증가하는데 대책 없나…전문가들 의견은, 2024. 7. 6., 최종검색일: 2025. 1. 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117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8)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참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제261조(특수폭행)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참고>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제284조(특수협박)

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참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제261조(특수폭행)

10)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등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개정안은 업무·고용 등으로 인한 보호 또는 감독 관계를 악용하는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분쟁의 자율적 해결가능성을 부여하려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반의사불벌죄의 일률적 적용 배제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업무·고용관계에 한하여 교제·가족 관계 등의 다른 관계와 달리 특별히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할 필요성의 정도, 현행법은 상습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3